

— 고성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—

(의안번호 제532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9. 3. 10	고 성 군 수
나. 회부일자 : 1999. 3. 13	
다. 상정·의결일자 : 1999. 3. 24	상임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제정이유

-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고성군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3. 주요골자

- 기존 규제의 심사,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, 규제의 신설·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등 심의·의결(안 제2조)
-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며,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함. (안 제3조)
-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(안 제5조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경상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표준안 ('98. 9. 25) 근거에 의거
-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군민의 생활에 불편 부당한 규제를 폐지하고, 비효율적인 각종 규제신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※ 경상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표준안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은
- 답 : 조례, 규칙 등 주민불편 사항을 폐지·완화 및 각종 규제신설을 억제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기구임.

6. 토론

- 찬성 : 군민생활 불편 부당한 규정을 폐지하고 신설 규제를 억제하는 역할을 해줌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
- 반대 : 행정 편의적인 위원회 증가로 인해 형식적이고 예산낭비적 요소가 많음.
- 표결결과 : 출석위원 6명중 찬성 4명, 반대 2명

7. 심사결과

- 1999. 3. 24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원안가결